| 국토교통부 | | 보도참고자료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|
| | | 배포일시 | 2018. 7. 20(금) / 총 1 매(본문1) |
| 담당 부서 | 건설정책과 | 담 당 자 | • 과장 김영한, 사무관 박정혁, 주무관 박장근 • ☎ (044) 201-3497, 3508 |
| | 주택정책과 | 담 당 자 | • 과장 김영국, 사무관 고경표 • ☎ (044) 201-4089 |
| 보 도 일 시 |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
"새 아파트도 '52시간 폭탄' 입주지연 분쟁 초읽기" 보도 관련

- □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건설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업무 지침을 마련(6.4)하였으며,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'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'를 개정(6.18)하였습니다.
 - 아울러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**표준공기기준 마련, 적정공사비 책정**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,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- □ 앞으로 정부는 건설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* 하면서,
 건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 원활히
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* 1차관 주재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간담회(5.11), 현장 점검회의(7.10, 7.12) 실시
- □ 참고로, **분양가상한제**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**주 40시간 근로를 기준**으로 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< 관련 보도내용(머니투데이, 7.20.) >
 - ◈ 새 아파트도 '52시간 폭탄' 입주지연 분쟁 초읽기
 - 공사기간 4개월 늘어 지체보상금 지급 불가피, 단축시간 맞춰 인력 충원땐 추가 비용 소요, 입주민 소송도 우려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 044-201-34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